



# 고지의무의 범위(1)

글 이승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 선임조사역

## 1. 머리말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 법 제651조의 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각각 규정하여 고지의무와 그 고지의무의 대상, 즉 고지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실무에서도 동 상법조항을 원용하여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을 질문표에 담아 보험계약자 등이 직접 작성토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이 질문표를 토대로 내부 인수기준에 따라 계약의 승낙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때 질문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인수여부 결정 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2. 분쟁조정 사례

### 가. 사실관계

2009. 8월 신청인(주부)은 남편과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을 들었다. 고등급 상피내 병변이란 자궁경부 상피세포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변형이 일어난 상태로 추후 자궁경부 상피내암으로 발전을 해서 결국 자궁경부암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당시 신청인에게 통보된 건강검진 최종판정결과에는 ‘자궁경부암 세포검사 결과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셔서 부인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검진이나 치료는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진결과에 대해 당해 병원에 전화로 문의하자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고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방문하십시오’ 라는 정도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병증의 위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그런 이유로 이후 정밀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약 4개월여가 지난 후 친구의 권유로 질병 및 암 보장을 주담보로 하는 본 건 보험에 가입하였고 당시 청약서 상의 질문표(계약 전 알릴 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현재 및 과거 병력에 대해 7개의 질문이 열거되어 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모두 ‘아니오’ 라고 기재하였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일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치열, 항문농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중략)
7. 팔, 다리 손(손가락 포함) 또는 발(발가락 포함)의 손실,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듬해인 2010년 5월 25일 신청인은 다시 통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때에는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상 정상세포’ 소견을 받았고,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다가 그



다음해인 2011년 2월 22일 배뇨통을 느껴 인근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1년 반전에 건강검진 시 받았던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을 다시 듣게 되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궁경부의 침윤성 악성신생물’으로 최종 진단되어 국립암센터로 전원해 자궁절제술 및 림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암 진단급여금과 암 수술입원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2009. 8월 건강진단결과상 ‘고등급 편평상피 내 병변’은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질병이며, 상피내암은 자사 인수기준상 ‘완치 확인 후 인수’ 또는 ‘인수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약 시 이를 제

대로 알렸다면 당연히 계약을 승낙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명백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며 자체 의료자문 결과 상피내 병변이 보험금 지급사유인 자궁경부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도 거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나. 과거 유사조정사례

정기적 또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건강검진과 관련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적정성 다툼은 빈발하는 분쟁 유형 중의 하나인데 서로 다른 조정결정을 한 다음 사례가 있다.

(사례 1) 종합검진결과의 미고지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008-22호, '08. 3.25 조정결정)

신청인이 종합검진 시 고콜레스테롤, 간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건에서 위원회에서는 검진 결과상의 소견이 질문표상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열거된 ‘병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받은 진단은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은 후 정밀검사를 위해 받은 종합검진이 아닌 단순히 건강검진을 위해서 받은 종합검진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

(심전도, 방사선, 건강검진 등)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검진결과 소변검사 결과 일부 이상소견과 부인과 검사에서 경미한 이상소견이 관찰된다는 의견 외에 별도의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2) 건강검진에 따른 심근경색 의증 소견을 보험계약 체결 시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제2009-30호, '09. 3.24 조정결정)**

신청인이 심근경색의증 소견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건에 대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증상’에는 ‘흉통, 심잡음, 부정맥, ... 심혈관질환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아니오’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검사상 구 전벽 심근경색 의증 소견입니다. 이는 심장혈관의 혈류차단으로 인해 심장근육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결과와 비교 및 흉통 등의 증상 유무 확인 후 필요시 정밀검사 또는 주기적인 검사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

제로 보험가입 이후의 입원 진료기록에 ‘4년 전부터 심전도상 안좋게 나온다’거나 ‘2년 전부터 활동 시 발생하는 Chest discomfort(따끔따끔)이 있어...’라고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만큼 이는 고지의무 위반요건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라는 고지의무 위반의 객관적 요건에는 해당되나, 검진결과 통보되는 내용이 통상 병변, 의심, 소견 등 내원요망 등 개괄적인 ‘병증’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기재가 많아 실제 계약해지의 적정성은 이러한 객관적인 요건 외에 검진 전후의 병력이나 치료 사실 등 사실관계, 병증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추세이다.

**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 건의 경우도 신청인이 보험 가입전의 건강검진 결과 받은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이 계약 전 알릴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유무가 쟁점이 되었다.

위원회는 상법 제651조의 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에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고, 당해 상품약관에서도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 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등이 계약 전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질문서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경우 상기병명 진단 이후 4개월여가 지나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별도의 정밀검사나 진단, 혹은 추가적인 치료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질문표에 열거된 "3. 최근 3개월"이나 "4. 최근 5년 이내" 등 현재 및 과거 병력에 대한 어떠한 질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질문 "4."에는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평편상피내 병변'에서 말하는 '병변(病變, legion)'이라 함은 '병적 작용에 의해 조직, 체액 등에 변화가 일어나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동 병변 자체가 향후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지 확정된 '암'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신청인은 법원에서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전 알릴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다면 그 계약을 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 33311 등)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사실은 비록 질문표에서 묻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사 인수지침 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보험자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서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 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0. 10.28 선고 2009다59688)'는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추정'이라 함은 '법률적 추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중요한 사항이 반드시 질문표에 열거된 내용에 한정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가입 시 다수의 운전자보험 보험계



약 체결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운전 중 사망하였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건에 대해서' 이 사건 보험계약들 외에는 보험청약서에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묻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일반적으로 상해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일반적인 고지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효과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들이 망인의 다른 보험계약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으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는 판례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자가 질문표 이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자가 이러한 사실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지 아니하였음이 보험자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인데, 위원회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상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나 건강검진결과 '병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위 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증상이 없었으며 위 증상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로 받지 않은 사실, 2010년 5월 25일 가입 전 검진방법(pap smear)과 동일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결과상 '정상 세포'로 확인)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질문표에 미포함된 사항까지 알려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나아가 악의적인 묵비로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㉞

〈총2회 연재, 다음호에 계속〉

※ 본고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145-5215, swonlee@fss.or.kr)